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52
----------	-----

2024. 11. 25.(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19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환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청주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개선 및 유능한 간호인력의 타지역 유출방지
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
○ 출연 내역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

○ 출연금액 : 172,000천원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출연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4조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함.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나. 제출 시기의 적정성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(동의)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본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이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되었음.
- 두 안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일이 11월25일(출자출연계획안), 12월11일(2025 당초예산안)로 각각 다르지만,
-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은 2024년에도 추진되었고 2025년 출연 금액 및 사업 내용에 특별한 변화 없음에도
-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.

다. 사업내용

-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 해결, 신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년간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명확함.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.
- 다만, 2023~2024년 공공간호사 중도 퇴사자 현황을 보면 충주의료원 11명(6개월 이하 7명), 청주의료원 15명(6개월 이하 7명)으로 의무복무 기간 2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바
- 향후 사업방식의 효율성과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·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청주·충주의료원 간호인력 현황>

(단위: 명/ '24.9. 기준)

구 분	계	청주의료원	충주의료원
정 원	492	272	220
현 원	452	257	195
과 부 족	△40(8.1%)	△15(5.5%)	△25(11.3%)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각 기관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법 및 조례에 규정된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절차상 2025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」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7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청주·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개선 및 유능한 간호인력의 타지역 유출방지
 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
- 출연금액 : 172,000천원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입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한찬오	곽경희	차주희	3132

기관명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				
출자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 : 김영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425, 도민교육관 (주요사업) 장학사업, 인재양성사업, 평생교육 					
출자출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 					
	구분	2024년 사업비	2025년 사업비*	재원별		
	계	344	344	계	도비출연 금	인재양성재 단
계			344	172	34.4	137.6
※ 재정부담 비율 : 도 50%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%, 의료원 등 40%						
출자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※ 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 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. ○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는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.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경영층 리더십 및 전문성, 경영혁신활동, 국·도정우수시책 추진실적 우수
- 공공의료분야 간호인력 장학생선발 신설 등 도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함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특이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(2년)로 간호사 수급 안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수행 기여
- 이에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우수한 간호인력을 발굴하여 공공간호사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내역	2024년 예산액(최종)(C)	2025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172	172	172	0	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
설립근거	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				전화번호 : 043-224-0221 홈페이지 : www.chrdf.or.kr		
주요연혁	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- '22.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23.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21명		20명		1명		
인 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
	이 사	윤○○	충청북도교육감		"		
	"	신○○	청주부시장		"		
	"	김○○	충주부시장		"		
	"	맹○○	제천부시장		"		
	"	이○○	보은부군수		"		
	"	한○○	옥천부군수		"		
	"	강○○	영동부군수		"		
	"	김○○	증평부군수		"		
	"	문○○	진천부군수		"		
	"	장○○	괴산부군수		"		
	"	서○○	음성부군수		"		
	"	이○○	단양부군수		"		
	"	김○○	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		"		
	"	민○○	충청북도행정국장		"		
	"	김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"		
	"	김○○	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		"		
	"	이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	24.09.13. ~ 26.09.12.		
	"	오○○	대신정기화물 회장		24.09.13. ~ 26.09.12.		
	"	이○○	유진테크놀로지 대표		24.09.13. ~ 26.09.12.		
	"	김○○	한국교원대 교수		23.06.29. ~ 25.06.28.		
	"	이○○	前 대성중학교 교장		23.06.29. ~ 25.06.28.		
"	류○○	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		23.06.29. ~ 25.06.28.			
"	정○○	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		24.09.13. ~ 26.09.12.			
감사	전○○	충청북도 라이즈추진과 과장		재임기간			
"	임○○	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		23.06.29. ~ 25.06.28.			
주요기능	-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81,0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-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 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기준	자산	83,137
		예산액	6,308	9,255		10,460	부채
	일반 회계	지자체 지원액	710	2,798		2,619	자본
2023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6,628			4,492		2,136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	구분	출자	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172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재학생 인재 양성
-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5. 1 ~ 12월
- 총사업비 : 344백만원(출연금 172백만원)
- 주요내용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 - 지원대상 :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(1인 800만원/년, 43명)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분담비율
운영재원 합계	344	8,000천원×43명 = 344백만원	100%
도 출연금	172	8,000천원×43명×50% = 172백만원	50%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	34.4	8,000천원×43명×10% = 34.4백만원	10%
청주·충주의료원	137.6	8,000천원×43명×40% = 137.6백만원	40%

□ 기대효과

- 공공간호사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자원 타지역 유출방지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우수한 간호인력 타지역 유출 및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인력 채용난 지속
-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축소, 진료기능약화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난항 예상

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- 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